

전담시설물 조정을 위한 평가기준(안)

평가항목		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A. 안전관리 필요성 (70)	1. 기능성 (25)	1-1. 시설물의 규모 (15) 1-2. 시설물의 특이사항(등급, 노후도 등) (10)
	2. 위험성 (10)	2-1. 시설물의 실질적 위험성 (10)
	3. 공공성 (15)	3-1. 시설물 붕괴 및 파괴 시 미치는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(15)
	4. 보안성 (10)	4-1. 시설물의 보안 중요성 (10)
	5. 신기술 (10)	5-1. 시설물의 신기술 적용성 (10)
B. 관리주체 안전관리 수준 (30)	1. 안전방침 및 조직화 (10)	1-1.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담조직 및 안전지표 유무 (5) 1-2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 수행 (5)
	2. 안전의무 이행 (10)	2-1. 법정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이행 및 결과 제출 (5) 2-2.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적기 제출 (5)
	3. 안전성과 관리의 전문성 (5)	3-2. 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결과의 시정 (5)
	4. 안전한 용역발주 체계의 운영 (5)	4-1. 점검 및 진단용역 발주 시 적정한 대가의 산정 및 집행 (5)

B 항목은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음

1. 시설물의 기능성

1-1. 시설물의 물리적 규모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전담시설 관리의 필요성	15

평가 기준	1	시설물별 규모를 고려한 안전진단의 난이도 수준을 확인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상세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0점 ◎ 상세기준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: 7점 ◎ 상세기준 모두 해당하는 경우 : 15점
비고	※ 시설물의 물리적 규모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세기준을 참조	
※ 제2종시설물의 경우 배점의 75%, 제3종시설물의 경우 배점의 50% 적용		

※ 시설물의 규모 상세기준

구분	제1종시설물	제2,3종시설물
건축물	공동주택	해당없음
	다중이용건축물	
	대형건축물	
	지하도상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면적 7.5만 m² · 층수 30층
	철도역시설	
교량	도로교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연장 2,000 m · 최대 경간장 100 m
	철도교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연장 3,000m
	복개구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연장 1,500 m
	육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없음 · 총 연장 75 m · 최대 경간장 50 m
터널	도로터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연장 2,000 m
	철도터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차로
	지하차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연장 500 m · 2차로
댐	다목적댐	
	발전용댐	
	용수전용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저수용량 25백만 m³ · 연장×높이 2만 m²
	지방상수도전용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저수용량 5백만 m³ · 연장×높이 1만 m²
	홍수전용댐	
항만	계류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대계류선박규모 2.5십만 m³ · 연장×높이 5,000 m²
	갑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대통과선박규모 2.5만m³ · 연장×높이 500 m²
	방파제, 파제제 및 호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장 1,500 m · 높이 7.5 m

구분		제1종시설물	제2,3종시설물
하천	수문 및 통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방고 20 m 제방폭 30 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방고 10 m 제방폭 10 m
	배수펌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획홍수위 15 m 총 펌프용량 2,000 m³/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획홍수위 10 m 총 펌프용량 1,000 m³/분
	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정보 연장 300 m 고정보 높이 10 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정보 연장 100 m 고정보 높이 5 m
	제방	해당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2,500 m
	하구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7,500 m 높이 15 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5,000 m 높이 10 m
상하수도	지방상수도		
	광역상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능력 10만 m³/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능력 2만 m³/일
	공업용수도		
	공공하수처리시설	해당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평균 5만 m³ 시간최대 7.5만 m³
옹벽	건축물옹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250 m 높이 10 m
	도로옹벽		
	철도옹벽		
절토사면	건축물사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250 m 높이 50 m
	도로사면		
공동구	공동구	해당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 5,000 m 총연장 10,000 m

※ 해당 상세기준 값은 시특법 상 제1종, 2종 시설물 구분 기준 및 FMS 시설물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

1-2. 시설물의 특이사항(등급, 노후도 등)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시설물의 안전등급과 노후도에 따른 안전도	10

평가 기준	1	시설물의 안전등급과 노후도 여부를 감안한 안전도 ◎ 공용년수 30년 미만, 안전등급이 'B'등급 이상인 시설물 : 0점 ◎ 공용년수 30년 미만, 안전등급이 'C'등급 이하인 시설물 또는 공용년수 30년 이상, 안전등급 'A', 'B'등급 시설물 : 5점 ◎ 공용년수가 30년 이상, 안전등급 'C'등급 이하 시설물 : 10점
비고		시특법 기준에 의해 공용년수 30년 이상인 시설물을 노후 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함

2. 시설물의 위험성

2-1. 시설물의 실질적 위험성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중대결함 발생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반복적인 보수, 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	10

평가 기준	1	시설물의 중대결함 발생 이력, 주요부재의 반복적인 보수, 보강을 고려한 시설물의 실질적 위험성 ◎ 중대결함 발생 이력 또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이력 3회 미만 : 0점 ◎ 중대결함 발생 이력 또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이력 3회 이상 : 5점 ◎ 중대결함 발생 이력 또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이력 10회 이상 : 10점
비고		시특법에 의해 기초의 세굴, 부등침하, 건축물 내력벽 손실 등 11가지 중대결함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FMS 데이터 기반 주요부재의 반복적인 보수보강 이력이 존재하는 시설물

3. 시설물의 공공성

3-1. 시설물 붕괴 및 파괴 시 미치는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시설물이 붕괴 및 파괴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	15

평가 기준	1	시설물의 붕괴 및 파괴 시 사회적·경제적인 파급력이 큰 항목(지리적 위치)을 확인 ◎ 지리적 위치가 서울특별시,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하면서 우회 등 대체시설물이 있는 경우 : 0점 ◎ 지리적 위치가 서울특별시, 광역시에 위치하면서 우회 등 대체시설물이 있는 경우 : 4점 ◎ 지리적 위치가 서울특별시,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하면서 우회 등 대체시설물이 없는 경우 : 8점 ◎ 지리적 위치가 서울특별시, 광역시에 위치하면서 우회 등 대체시설물이 없는 경우 : 15점
비고		* 시설물의 붕괴 또는 파괴는 시설물안전법*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말함 * 시설물안전법 제37조제1항: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피해 * 사회적 파급효과는 시설물 피해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피해와 불편함*의 예상 수준으로 평가 * 대체(우회)시설물, 단수, 침수 등 *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설물 피해로 인해 야기되는 직·간접적인 재산피해의 예상 수준으로 평가

4. 시설물의 보안성

4-1. 시설물의 보안 중요성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시설물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보안유지 필요 수준	10

평가 기준	1	시설물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 상 미치는 영향 ◎ 시설물이 보안시설물 또는 국가핵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0점 ◎ 시설물이 보안시설물 또는 국가핵심기반시설물에 일부 해당하는 경우 : 8점 ◎ 시설물이 보안시설물 및 국가핵심기반시설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: 15점
비고		* FMS상 보안시설물 및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물 등록 여부

5. 시설물의 신기술성

5-1. 시설물의 신기술 적용성(시립대, 관리원과 추가 논의 필요)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안전점검 신기술, 신형식/신공법 적용에 따른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점검, 진단 시 특수 기술 필요 여부	10

평가 기준	1	안전점검 신기술 적용 가능성 및 특수한 점검, 진단 기술 필요성 여부 ◎ 안전점검 신기술 및 신형식/신공법 적용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0점 ◎ 안전점검 신기술 및 신형식/신공법 적용 대상 시설물에 일부 해당하는 경우 : 5점 ◎ 안전점검 신기술 및 신형식/신공법 적용 대상 시설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: 10점
비고		케이블 점검 로봇(교량), GPR 어태치먼트(터널, 공동구 등) 등 안전점검 신기술 적용 가능 시설물 엑스트라도즈드교, 초장대 현수교, 비정형 곡면 구조 등 신형식/신공법 적용을 통한 점검, 진단에 특수 기술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

1. 안전방침 및 조직화

1-1.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담조직 및 안전지표 유무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전담부서가 지정·운영되고, 기관의 외부평가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지표 ¹⁾ 를 활용	5

평가 기준	1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²⁾ 전담부서의 운영 유무를 확인하고, 기관의 외부평가 지표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된 지표를 활용 중인지 확인 ◎ 조직 및 안전지표 모두 만족 : 0점 ◎ 조직 및 안전지표 중 1개만 있는 경우 : 3점 ◎ 조직 및 안전지표 모두 없는 경우 : 5점	
비고	1) 안전지표란 당해연도 기관의 외부평가 지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,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등을 의미 2)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란 ‘시설안전 분야’를 기본으로 점검 및 진단 등 실시, 보수·보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말하며, 그 외에 계약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

1-2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 수행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해 용역 준공 전 기술심의 실시	5

평가 기준	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직유무와 기술심의 실시여부를 확인 ◎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 실시 : 0점 ◎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 미실시 : 5점	
비고	<관계법령>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	

2. 안전의무 이행

2-1. 법정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이행 및 결과 제출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의 법정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기한 내 이행 및 결과제출	5

평가 기준	1 최근 5년간 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(제1·2종)의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한 내 이행 및 결과 제출 여부를 확인 ◎ 기한 내 모두 이행 및 제출 : 0점 ◎ 1건 이상 기한 내 지연 이행 및 제출 : 3점 ◎ 1건 이상 기한 내 미이행·미제출 : 5점	
비고	<관계법령> 시설물안전법 제11조(안전점검의 실시), 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, 제17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), 제40조(시설물의 성능평가) 제1항 및 4항	

2-2.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적기 제출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기한 내 제출 여부	5

평가 기준	1	최근 5년간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모든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기한 내(매년 2월 15일) FMS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<input type="radio"/> 기한 내 모두 제출 : 0점 <input type="radio"/> 1건 이상 지연제출 : 3점 <input type="radio"/> 1건 이상 미제출 : 5점
비고		<관계법령> 시설물안전법 제6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

3. 안전성과 관리의 전문성

3-2. 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결과의 시정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부적정 보고서의 시정률	5

평가 기준	1	최근 5년간 관리주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부적정 보고서 시정률을 확인 <input type="radio"/> 부적정 보고서가 없거나 시정률이 100%인 경우 : 0점 <input type="radio"/> 시정률이 0% 초과 ~ 5% 이하인 경우 : 3점 <input type="radio"/> 시정률이 5%를 초과한 경우 : 5점
비고		<관계법령> 시설물안전법 제18조(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)

4. 안전한 용역발주 체계의 운영

4-1. 점검 및 진단용역 발주 시 적정한 대가의 산정 및 집행

번호	세부기준	배점
1	최근 5년간 관리주체별 소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시 법상 적정대가로 발주하였는지 여부	5

평가 기준	1	최근 5년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가 법상 적정대가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◎ 모든 용역대가가 적정대가의 86% 이상 : 0점 ◎ 용역대가가 적정대가의 70% 이상 ~ 86% 미만이 1건 이상인 경우 : 3점 ◎ 용역대가가 정적대가의 70% 미만이 1건 이상인 경우 : 5점
비고	<관계법령>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	